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

2026년 11월 13일

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46호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·관리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을 알맞게 개선·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, 쾌적한 학교 실

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·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.
2. "유해물질"이란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말한다.
3. "학교 실내 공기질"이란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기의 질 등의 유지·관리 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질을 말한다.
4. "공기정화설비"란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·유지 및 유해물질 예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 실내 공기질·유해물질 관리 계획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·관리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·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
2.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의 예방·관리를 위한 대책

3.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공기정화설비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
5. 관계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,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실내공기질·유해물질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실내공기질·유해물질개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제4조의 관리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

3.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

한다.

1.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

2.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
2.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때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점검 및 조치) ①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, 청소, 공기정화설비 정비 등 적절한 개선·보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공기정화설비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필터의 교체·청소 등 필요한 유지·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유지·관리 내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등) ① 교육감은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·유해물질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발·보급하는 교육자료 또는 그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제9조(미세먼지 예측발령 활용) 학교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마련한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사 일정 등 학교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
2. 학부모 안내
3. 실외수업 및 수업시간 조정, 등·하교 시간 조정, 휴업 등에 필요한 조치

제10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관리계획에 반영

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유해물질 점검 등)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특수학교가 「환경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점검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12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와 유해물질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·보급하고, 교육·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측정·점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.